

외국인 근로자 고용폭 커진다

◇ 취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농업분야에 처음으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2일 농가에 첫 연수생들이 배정되었다. 외국인들의 농업연수는 정부가 농업연수제도를 도입한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는 크다 하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력 활용에 다각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 농업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국내 첫발

농촌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시행에 따른 첫 연수생 243명이 지난 7월 30, 31일 양일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들어온 연수생들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박 3일간 농협 공주공제교육원에서 건강검진후 출입국관리 관련법률, 한국어 등 기본교육을 받고 대상업종과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당 1~10명이 배정되어 2일부터 농가에 투입되었다. 이번에 투입된 연수생은 축산분

야 174명과 원예분야 69명이었으며, 양계분야는 11개 농가로 31명이 배정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16일(양계 8개농가 21명)과 26일에는 201명, 150명 등 1달동안 600여명의 농업연수생이 농업분야에 배정되었다. 현재까지 신청된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400여 농가에서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계분야는 33농가에서 105명의 농업연수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계산업과 농업연수제도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 농업연수제도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 임금인상, 경영규모의 확대 등으로 도입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계분야 역시 3D업종으로 분류되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외국인에 대한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외국인(불법체류자)을 고용하고서라도 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양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실태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일부로 기용한 농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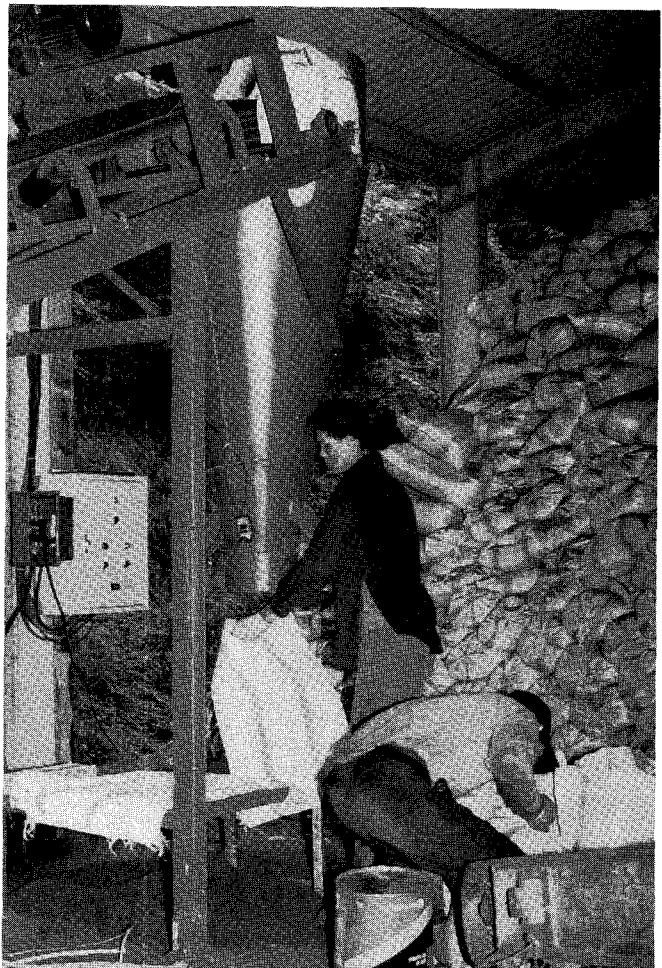
산업연수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의거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노동부(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산업연수제도가 활용되어 왔다.

본회는 양계분야의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희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1995년 본회에서 양계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고용희망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조사업체수 540개소중 244개소(양계장 226개소, 도계장 17개소, 기타 1개소)에서 1,006명의 고용인력을 희망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6,800여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림부에 본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농업연수제도는 지난 1997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IMF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중단이 되었으나 2002년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결과 외국인력 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농업연수제도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 양계분야에서는 6,800명, 양돈분야에서는 4천명, 시설원예에서는 7백명의 소요인원을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 외국인농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로 외국 근로자의 고용폭이 넓어졌으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 등 당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3. 농업분야 3년내 5천명 도입키로

2002년 7월18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3년간 5천명의 범위내에서 양계, 양돈, 시설원예 등 비계절적이면서 기업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키로 결정되면서 농업연수제도의 추진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특성상 수행기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농협중앙회가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5천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외국인농업연수생 관리지침이 발표되었으며, 금년 1월 1일에는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이 농협중앙회에 설치되면서 농림부로부터 본 제도의 운영요령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연수생 모집에 들어갔다.

농협은 앞으로 농촌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국가별로 지속적으로 입국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별 농업연수생 배정인원은 우즈베키스탄 1,800명, 몽골 200명, 카자흐스탄 800명, 키르키즈스탄 200명, 우크라이나 200명, 중국 1,800명 등 모두 6개국에서 5,000명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중국은 SARS 등 국제적인 여건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농업연수생의 자격은 30~45세로서 농업 종사 경험과 소정의 교육이수 및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이며 입국전 송출국에서 한국어 등 연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0일간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입국하여 3일간 한국의 문

표1. 양계업 연수생 배정기준

업 종	규모별 배정기준(단위 : m ²)									
	육 계	5,000 ~8,000	8,000 ~11,000	11,000 ~14,000	14,000 ~17,000	17,000 ~23,000	20,000 ~26,000	23,000 ~26,000	26,000 ~29,000	29,000이상
산란계	2,000 ~3,500	3,500 ~5,000	5,000 ~6,5000	6,500 ~8,000	8,000 ~9,500	9,500 ~11,000	11,000 ~12,500	12,500 ~14,000	14,000이상	
인원수(명)	2명이내	3	4	5	6	7	8	9	10명이내	

※양계업의 경우 양계장 면적 기준이며, 산란계의 경우 여러층이 있을 경우는 총 사육면적의 합계 기준임. 종계장의 경우 부화장면적을 합한 면적 적용.

화 · 기후, 한국인과 농업의 특성 등에 대해 집합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가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에서 대행을 하게 된다.

양계의 경우 연수생 배정기준은 표1과 같은데 육계의 경우 농장면적이 5,000m² 이상, 산란계, 종계의 경우 2,000m²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를 수수로 환산하면 종계의 경우는 12,000수(평당 20수), 산란계는 20,000수(평당 35수), 육계는 60,000수(평당 40~50수)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대부분 채란농장과 종계장에서 신청을 한 반면 육계농장에서는 2개 농가만 신청해 육계업의 경기 불안정과 휴지기간이 길어 신청이 다소 저조한 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배정기준이 높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배정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수생들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1년은 연수, 2년은 연수취업의 자격이 주어지며, 숙식제공, 건강 산재보험 혜택 등 65만원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연수기간이 끝나면 개인별 능력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다만 농업연수생은 농업분야를 이탈하여 타 산업에 취업을 할 수는 없으며, 농업

분야내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농협의 관리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 고용주도 연수생에 대해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데 고용주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하며, 연수생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이런 사

실이 적발되면 앞으로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4.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본국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 하였으나 노동업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지난 7월 30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출국사태에 따른 노동업계의 노동력 공백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와 농업연수제도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고용주가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만약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희망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신고를 마친 불법체류자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의 동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당수의 외국노동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8월말까지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때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임을 예고한 상태, 따라서 현재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재신고기간을 주는 등 양성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 맷음말

양계산업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들어온 산업 연수생을 시작으로 양계농가에서 원활 경우 심사를 통해 산업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거나, 고용허가제를 활용, 취업자격이 주어진 외국인에 대해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연수생 신청의 경우 농협에서는 농가들로부터 계속적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농업연수생 활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시군지부에서 안내를 받거나 농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정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산업연수생을 받은 농가들은 기본적인 언어소통과 농업분야에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고 최소한 영어정도는 아는 외국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처럼 도입된 산업연수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부작용 없이 양계산업에 접목되어 그 테두리 안에서 많은 양계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